

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5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97. 12
제 출 자 : 안산시장

1. 개 정 이 유

- 지금까지는 혼합업종(가정용 + 업무용, 가정용 + 영업용)의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의 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사용료 부과의 형평성을 저해하였으나,
- 이제부터는 가정용가구당 월사용량에 대한 기준을 15m³으로 책정, 초과사용량에 대하여는 업무용 또는 영업용으로 부과하여 부담의 형평을 유지하고자 함

2. 주 요 골 자

- 혼합업종의 가정용가구당 월사용량이 15m³을 합산한 양보다 많은 경우 - 가정용가구당 월사용량은 15m³으로 하고 초과사용량은 업무용 또는 영업용 부과
- 혼합업종의 가정용가구당 월사용량이 15m³을 합산한 양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- 가정용만을 부과

3. 참 고 사 항

- 소요예산 : 해당사항 없음
- 입법예고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입법예고기간 : 97. 11. 1 ~ 11. 20

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27조 제3항 본문과 제1호중 “영업용”을 “영업용(또는 업무용)”으로 하고,
동조 동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
2.월 사용량이 가정용가구당 15m³을 합산한 양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-
가정용만을 적용한다.
동조 동항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7조(업종의 구분) 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<u>영업용과</u> 1가구 이상의 가정용 수도를 동 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.</p> <p>1. 월 사용량이 <u>영업용가구와 관계</u> <u>없는 가구당 월사용량(이하 “가정</u> <u>용가구당”이라 한다)15m³을 합산한</u> <u>양보다 많은 경우 - 가청용가구</u> <u>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15m³으로</u> <u>하고 그 잔여량은 영업용 사용량</u> <u>으로 한다.</u></p> <p>2. <u>월 사용량이 가정용가구당 10m³</u> <u>을 합산한 양보다 많고 15m³을 합</u> <u>산한 양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-</u></p>	<p>제27조(업종의 구분) ① (현행과 같 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u>영업용(또는 업무용)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-----<u>영업용(또는 업무용)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영업용(또는 업무용)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2. <u>월 사용량이 가정용가구당 15m³</u> <u>을 합산한 양보다 적거나 같은 경</u> <u>우 - 가정용만을 적용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가정용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10m'으로 하고 그 잔여량은 영업용 사용량으로 한다.</u></p>	
<p>3. <u>월 사용량이 가정용가구당 5m'을 합산한 양보다 많고 10m'을 합산한 양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-</u></p>	<p>3. <<삭제></p>
<p><u>가정용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5m'으로 하고 잔여량은 영업용 사용량으로 한다.</u></p>	
<p>4. <u>월 사용량이 가정용가구당 5m'을 합산한 양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- 영업용만을 적용한다.</u></p>	<p>4. <<삭제></p>